

알기쉬운 세무상식

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세제보완②

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바뀐 세법을 모아봤다.

실명제 실시후 보완된 부분을 보면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을 알 수 있다.
개정세법에 대해 철저히 알아둬으로써 부당하게 받게 될지도 모르는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자.

부가가치세의 부담경감

①한계세액공제제도 신설

②소액 부정수금액 인상

부가가치세 소액부정수금액을 1과세기간 납부세액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.

③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

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업종을 종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, 공제율을 3/103으로 통일했다. 다만, 제조업에 대하여는 '94년 1년간 종전의 공제율(5/105, 3/103)을 적용한다.

④매출채권 대손시 공제제도 신설

외상매출금, 기타 채권의 대손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,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.

⑤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확대

음식·숙박·소매·서비스 업종에 한해 인정하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에게까지 확대·적용토록 했다.

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

'92년부터 2년간 적용해 지난해 말로 그 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운용토록 하는 한편 감면율 및 감면요건 등을 조정해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.

- 대상기업 : 중소기업체
- 소득세·법인세의 세액감면율
 - 94년 : [소득금액 1억원(개인사업자는 5,000만원) 이하 : 30%
 - [소득금액 1억원(개인사업자는 5,000만원) 초과 : 20%
 - 95년 :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20%
- 적용기간
 - 적용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운용
- 감면요건
 - '94. 1. 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상 여타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은 적용 배제

기업경영 여건 및 재무구조 개선

①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

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,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.

구 분	종 전	개 정
적정유보소득	배당가능이익의 40%	배당가능이익의 50%와 자본금의 10% 중 큰 금액
세율	25%	15%

②배당세액 공제범위 확대

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2중과세 해소를 위해 종전에는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의 1/3(배당금액의 17/99)만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였으나, 앞으로는 이를 전액(배당금액의 22/100)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토록해 2중과세를 조정했다.

③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

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·조정했다.

구 분	종 전	개 정
중소기업	1,200만원 자본금의 2% 매출액의 0.2%] 합계	1,800만원 자본금의 2% 매출액의 0.3%] 합계
일반기업	600만원 자본금의 2% 매출액의 0.1%] 합계	600만원 자본금의 2% 매출액의 0.15%] 합계

④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비과세제도 신설

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'주택저축'을 폐지하는 대신 '장기주택마련저축'을 신설하고 그 이자소득을 비과세토록 했다. [1]

- 가 입 대 상 :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
- 가입한도액 : 월 100만원
- 통 장 수 : 1인 1통장
- 취 급 기 관 : 한국주택은행
- 저축계약기간 : 10년 이상으로 하되 5년 이상 불입시 이자소득 비과세

※ **알립니다** : 본 편집부에서는 독자여러분이 부딪히는 세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무상담을 받습니다.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의문이 생기는 세무문제를 우편으로 질문해 주시면 지면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